

 식품의약품안전처	배 포	2018.4.16.(월)
	담당 과	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관리법시행추진단 (☎043-719-1736)
	과 장	김성곤 (☎043-719-1711)
	연구 관	김혜정 (☎043-719-1736) 김방현 (☎043-719-1739)

보도자료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4월 19일 본격 시행

- 주방세제,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-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주방 세제, 음식점용 물티슈,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을 오는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-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,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·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- 위생용품 19종은 ‘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’으로,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.
- * 위생용품 19종: 세척제(주방세제), 행균보조제, 음식점용 물티슈·물수건, 종이냅킨, 일회용 컵·손가락·젓가락·포크·나이프·빨대, 이쑤시개, 화장지, 일회용 면봉·기저귀·팬티라이너, 일회용 행주·타월·마른티슈
- 아울러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‘위생용품’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, 내용량, 제조연월일,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.

-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,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.
-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, 위생물수건처리업, 위생용품수입업으로,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참고로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.
-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 세제, 행균보조제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 일회용 기저귀·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,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,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되어 유통할 수 있습니다.
- 한편,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하였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.
- 위생용품 제조·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·기구 목록을 삭제하였고,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.
-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pass)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간 수입 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.

-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-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(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법, 시행령, 행정규칙)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참고> 1. 위생용품의 종류 및 예시

2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시행 전·후 안전관리체계 비교

<참고 1> 위생용품의 종류 및 예시

□ 위생용품 종류 및 예시

위생용품의 종류	예시	시행전 소관법률
세척제, 행굼보조제		공중위생법 (복지부)
위생물수건		
일회용 이쭤시개		
일회용 종이냅킨		
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		
일회용 컵		
일회용 숟가락·젓가락		전기생활용품안전법, 어린이제품법 (산업부)
화장지		
일회용 면봉(어린이용, 성인용)		
일회용 기저귀(어린이용, 성인용)		식품위생법 (식약처)
일회용 포크·ナイ프		
일회용 빨대		-
일회용 행주·타월		
일회용 팬티라이너(의약외품제외)		
마른티슈(물티슈용도)		

<참고 2>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시행 전·후 안전관리체계 비교

□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시행 전·후 안전관리체계 비교

	시행 전('18.4.19이전)		시행 후('18.4.19이후)
	(구 공중위생법)	(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)	(위생용품 관리법)
관리주체	복지부	산업부	식약처
위생용품 범위	✓(구)위생용품(9종) • 세척제 • 행굼보조제 • 위생물수건 • 기타위생용품(6종) - 일회용 물컵·숟가락·젓가락·이쑤시개, 종이냅킨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	✓안전관리대상제품(3종) • 화장지 • 일회용 면봉 • 일회용 기저귀	✓위생용품(19종) • 세척제 • 행굼보조제 • 위생물수건 • 기타위생용품(16종) - 일회용 컵·숟가락·젓가락·이쑤시개, 종이냅킨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- 화장지, 일회용 면봉·기저귀 - 일회용 포크·나이프·빨대, 일회용 행주·타월 - 일회용 팬티라이너(의약품 제외) - 물티슈용 마른티슈
	※ 식품용 기구(3종) • 일회용 포크·나이프·빨대	※ 비관리 제품(4종) • 일회용 행주 • 일회용 타월 • 일회용 팬티라이너 * 의약품제외 • 물티슈용 마른티슈	
영업종류 및 시설기준	✓영업의 종류(2종) • 위생용품제조업 • 위생처리업 ✓시설기준 • 설비 기계기구류 <u>일괄규정</u> * 기본기계·기구 목록 지정 • 작업장, 급수시설, <u>화장실</u> , 기타시설	<없 음>	✓영업의 종류(3종) • 위생용품제조업 • 위생용품수입업(신설) • 위생물수건처리업(명칭변경) ✓시설기준 • 설비 기계기구류 <u>자율규정</u> * 기본기계·기구 목록 <u>삭제</u> • <u>화장실 설비 삭제</u> * 작업장, 급수시설, 창고등시설, 검사실(위탁시제외)
품목제조 보고등	<없 음>	<없 음> * 출고전 안전확인 신고(기저귀)	✓ 품목제조보고 • 원료·성분명 및 제조방법 <u>설명서 등 보고</u> * 세척제, 행굼보조제, 일회용 기저귀·팬티라이너, 물티슈 ✓ 생산실적보고 • 품목별 <u>연간 생산실적</u> 및 위생처리 실적 보고

	시행 전('18.4.19이전)		시행 후('18.4.19이후)
	(구 공중위생법)	(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)	(위생용품 관리법)
수입 신고	✓ 방문신고 * 신고관청 분산(일부 지방식약청, 국립검역소) ✓ 수입검사 • 서류·현장·정밀 * 정밀검사 주기(1년) ✓ 신고수수료(42,300원)	<없 음> * 최초 통관전 안전확인신고(기저귀)	✓ 전산신고 * 신고관청 <u>일원화</u> (6개 지방식약청) ✓ 수입검사 • 서류·현장·정밀 * 정밀검사 주기(5년) • 무작위 표본검사(신설) ✓ 검사수수료(신설) * 수입신고수수료 42,300원 <u>폐지</u> ✓ 재검사 제도(신설)
기준규격	✓ 복지부 고시(2개) *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*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	✓ 산업부 고시(2개) *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(기저귀) *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의 안전기준(면봉, 화장지)	✓ 식약처 고시(1개) *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
표시기준	✓ 원재료·함량 * 세척제·행굼보조제 ✓ 업체명 ✓ 제품명 ✓ 제조연월일, 중량	✓ 주 재료명 ✓ 제조(수입)자명 ✓ 모델명 ✓ 제조연월, 포장단위 ✓ KC 마크 표시	✓ 원료 또는 성분명 ✓ 업체명 ✓ 제품명 ✓ 제조연월일, 내용량 ✓ '위생용품' 글자 표시
자가품질 검사 등	✓ 매월 2회 이상 • 제조업 월 2회 이상 • 위생처리업 월 1회 이상	<없 음>	✓ 품목별 차등화 • 위생물수건 <u>1회이상/월</u> • 품목제조보고대상 <u>1회이상/3월</u> • 그외 <u>1회이상/6월</u>
위생 감시원	✓ 공중위생감시원	<없 음>	✓ 위생용품위생감시원 ✓ 소비자위생감시원(신설) * 민간인 중 위촉
벌칙 등	✓ (벌칙)1년, 500만원이하 ✓ (행정처분) • 개선명령, 영업정지·폐쇄 • 폐기처분 ✓ (과태료)100만원이하	✓ (벌칙)3년, 3000만원이하 ✓ (행정처분)없음	✓ (벌칙)1년, 1000만원이하 ✓ (행정처분) • 시정명령, 영업정지·폐쇄 • 폐기처분 • 품목제조정지(신설) ✓ (과태료)100만원이하